

광주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3가단81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록영, 김민국

피 고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남도현

변 론 종 결 2023. 11. 21.

판 결 선 고 2023. 12. 1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망 E 사이에 2023. 3. 23. 체결된 증여계약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과 망 E 사이에 2023. 3.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23. 3. 23. 접수 제371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3. 3. 23.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23. 3. 23. 접수 제3718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망인은 2023. 3. 24.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망인의 임종 직전에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허위로 인감증명발급위임장을 작성하여 인감을 발급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 형성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의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인바,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유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그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허용될 수 없고, 원고들 주장 소정과 같은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증여계약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석

별지